

2-3. 불임 · 난임 휴직

가. 근거

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7의3호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5조제1항제1호

나. 휴직사유: 불임 ·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

다. 휴직의 요건: 불임 ·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

라. 휴직기간 및 횟수

1) 법정휴직기간 : 법 제44조제1항제7의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

2) 휴직의 횟수

가) 제44조제1항제7의3호(불임 · 난임치료)의 경우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, 동일 사유로 1년 이내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

나) 제44조제1항제7의3호(불임 · 난임치료)의 휴직기간은 불임·난임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함

다) 제44조제1항제7의3호(불임 · 난임치료)의 휴직기간(총2년)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(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필요)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,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, 불임·난임의 정도, 요양기간,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의 부여가 가능함

마. 휴직신청서류

1) 휴직신청서: 소속, 직, 성명, 휴직사유, 휴직기간, 휴직목적 등을 명시
-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

2) 휴직사유 입증서류

가)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'의료법'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)
※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

나)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3에 따른 불임·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

다)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바. 불임 · 난임 휴직자 동태파악

- 「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」 제26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교원은 6개월마다 불임·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고,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함